

# 고 시

## 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749호

###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(화천신읍 마을정비형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 및 『주택법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천신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13일  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업명(변경없음) : 화천신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
2. 사업시행자(변경)
  - 가. (변경전)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
  - (변경후)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
  - 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3. 사업개요(변경)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가. 대지위치	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48-1 일원	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819	
나. 사업면적(m <sup>2</sup> )	8,580.00	8,572.00	감 8
다. 대지면적(m <sup>2</sup> )	8,580.00	8,572.00	감 8
라. 연면적(m <sup>2</sup> )	6,667.75	좌동	
마. 용적률(%)	73.53	73.60	증 0.07
바. 건폐율(%)	13.57	13.58	증 0.01
사. 사업규모	아파트 2개동(120세대, 7~9층) 및 부대·복리시설	좌동	
아. 구 조	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	좌동	
자. 사 업 비	19,362,624천원 (주택도시기금 4,489,360천원)	좌동	
차. 사업기간	2018. 12. ~ 2024. 12.	좌동	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·지번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를 기재한 서류(변경없음)
5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(변경)
  -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: 붙임1
  -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: 붙임2
6.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7. 기 타: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,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(033-258-4453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[붙임1]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

1. 용도지역 결정조서 (해당사항 없음)
2. 용도지구 결정조서 (해당사항 없음)
3. 용도구역 결정조서 (해당사항 없음)
4.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조서 (해당사항 없음)

■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
[붙임2]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(변경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내역

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화천신읍지구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	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819	8,580.00	감) 8	8,572.00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

구분	위 치	면 적(㎡)			결정(변경)사유서
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819	8,580.00	감) 8.00	8,572.00	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사업면적 감소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※ 구역계 변경 없음(감 8㎡)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도 : 게재생략
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- 가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조서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조서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구 번호	면적(㎡)		획지				비 고
	기정	변경	획지번호	위치	면적(㎡)		
					기정	변경	
합계	8,580.00	8,572.00	-	-	8,580.00	8,572.00	
1BL	8,580.00	8,572.00	①	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819	8,580.00	8,572.00	

- 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마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4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도

- 가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: 게재생략
- 나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: 게재생략